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 그린바이오 상품 해외 공동마케팅 운영』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3.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MIFI Microbial Institute for Fermentation Industry

I. 과업 개요

가. 과업명 :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 그린바이오 상품 해외 공동마케팅 운영

나. 과업량 : 4개 시군(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진안군) 제품 해외 공동마케팅

다. 과업목적 : 동부권 그린바이오 상품 공동마케팅 생태계 기반 구축을 통해 프랑스 파리 국제식품박람회에서 최소 2건 이상의 수출계약 체결 및 수출 가능 제품군 4건 이상 발굴<한국관 내 전북특별자치도 공동관 설치 운영 필수>

라. 과업기간 : 계약일 ~ 2026. 12. 18 까지

마. 전시개요

< 전시개요 >

- 전시명 : 프랑스 파리 국제식품박람회, SIAL 2026
- 장소 : Parc des Expositions de Villepinte(프랑스 파리)
- 기간 : 2026. 10. 17(토) ~ 10. 21(수)
- 분야 : 식품 및 음료산업(식품, 음료, 건강 및 웰빙제품, 제과 및 스낵, 장비 등)
- 규모 : 120개국, 7,000개 이상의 기업 참여, 30만명 이상의 참관객
- 위상 : 식품 및 음료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탐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며 혁신적인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행사임.
제조업체, 유통업체, 바이어, 외식업 관계자들에게 필수적인 행사로 평가받고 있음

바. 소요예산 :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아. 과업개요

구분	과업내용
사전 운영 관리	- 전체 운영 일정표 등 기획 및 계획 수립 - 시군별 대상 품목 안내자료 제작 등 - 시군별 품목리스트 중 전시 및 홍보제품 선별
부스설치 등	- 부스면적 (33㎡) - 전시회 현장 부스 시공 및 설치, 부스간판 및 벽면, 안내데스크, 상담테이블, 의자 등 부대시설 설치 (제품 소개존, 시식존, 바이어 상담존, 미디어&홍보존 설치)
통역원 섭외 및 교육	- 전문 통역원 섭외 및 교육, 현장 관리 등

물류 운송 지원	- 시군별 전시물 및 홍보물의 국내 → 전시회 현장 운송
현지운영	- 제품 소개존(시군별 제품 소개) - 시식존(전시 제품을 활용한 음식 시연 및 현지 식생활에 적용 가능한 레시피 제공) - 바이어 상담존(사전 섭외 바이어 및 현장 내방 바이어를 대상으로 심층 상담 진행) - 미디어&홍보존(미디어, 인플루언서 초청 등 전시 제품 소개하고 보도 자료 배포 등)
수출입 자문	- 수출계약 시 계약서, 인증절차 자문 - 협약서, 계약서, 무역서류 전반 검토
사후관리	- 바이어 상담 실적 관리, 만족도 조사 등 - 전시회 참가 실적 및 현지 시장 분석 보고 자료 제작 등

Ⅱ. 과업 세부내용

1. 사전 운영 관리

- 가. 전체 운영 일정표 등 기획 및 계획 수립
- 나. 시군별 대상 품목 안내자료 제작 및 배포
- 다. 시군별 품목리스트 중 제품 선정
- 라. 운영 매뉴얼 및 비상 대응 체계 구축 등

2. 부스설치 및 현장 운영 관리

- 가. 참가규모에 따른 부스 구성 계획 수립
 - 제품 소개존, 시식존, 바이어 상담존, 미디어&홍보존
- 나. 부스 콘셉트, 동선, 상담 공간 배치 계획 수립
- 다. 전시회 주최사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부스 구조물 시공 및 설치
- 라. 부스 간판, 벽면 그래픽, 출력물 제작 및 설치
- 마. 바닥 시공 및 안내데스크, 상담테이블, 의자 등 부대시설 설치
- 바. 전시 기간 중 시설물 상시 점검 및 시설 관련 민원 및 문제 발생 시 대응 체계 마련

3. 통역원 섭외 및 교육

- 가. 통역원 전시·산업분야 등 경력 검증을 통한 전문 통역원 섭외
- 나. 기업·제품·기술자료 기반 사전교육 실시
- 다. 통역원 교체 및 추가 투입 등 대응 체계 마련

4. 물류 운송 지원

- 가. 시군별 제품 국내 → 전시회 현장 운송 실시
- 나. 통관 및 현지 반입 절차 관리 및 대응

5. 현지운영

- 가. 박람회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전반
- 나. 4개 존별 운영
 - 제품 소개존(시군별 제품 소개)
 - 시식존(전시제품을 활용한 시연 및 현지 식생활에 적용 가능한 레시피 제공 등)
 - 바이어 상담존(사전 섭외 바이어 및 현장 내방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심층 상담 진행)
 - 미디어&홍보존(미디어, 인플루언서 초청 등 제품소개 및 보도자료 배포 등)

6. 수출입 자문

- 가. 수출 계약 시 계약서 및 인증 절차 자문
- 나. 협약서·계약서·무역서류 전반 검토

7. 사후관리

- 가. 바이어 상담실적 관리 및 만족도 조사
- 나. 현지 박람회 운영 관련 성과 및 향후 개선 방향 제안 내용 등을 담은 성과 분석 자료 제작 등

Ⅲ. 기타사항

1. 일반사항

- 가. 본 과업지시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 그린바이오 상품 해외 공동 마케팅 운영'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하 '발주자'라 함)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나. 과업지시서나 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동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본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 과정을 반드시 숙지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다.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 중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며, 추가 과업이 필요할 시에는 발주자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마. 본 과업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표, 과업수행자 명단 및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바.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 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발주자와의 협의를 통해 본 과업에 반영할 수 있다.
- 사. 과업수행자가 본 과업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 아. 과업 완료 후에도 성과에 대한 보완 및 추가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즉시 보완·수정하여야 한다.
- 자. 본 과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는 구체적이고 실행 위주의 계획을 수립 하되 창의적이고 독창적이어야 한다.
- 차. 또한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원활한 용역 추진을 위한 정기 업무협의 및 수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보안사항

-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나. 결과물은 과업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안 되며, 과업폐기물은 파기 또는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 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착수와 동시 발주처에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는 착수보고서 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과업 참여자가 교체된 경우 즉시 신규 과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라.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 책임은 과업수행자 에게 있다.
- 마. 과업 수행 종사자의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며, 보안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 바. 과업수행자는 용역 내용이 제반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권리 및 의무의 양도금지 등

- 가.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과업상의 이행 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발주자 또한 과업수행자의 사전 동의 없는 본 과업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나.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집 및 생산된 자료는 발주자에게 귀속되며, 과업수행자가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에 공표하거나 제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다. 계약 해지시 기 지불된 대금 및 관련 행정처리는 관련 법률 및 발주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 결과물의 소유 및 하자

- 가. 결과물 및 그에 따른 직간접적인 저작권,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다.
- 나. 과업기간 중 내용에 대하여 다른 용역에 활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 경우 활용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조사상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제출된 결과물을 업무에 반영한 결과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여부에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보완·수정하여야 한다.

5. 계약의 변경 및 해지

가.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하기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 발주자에 의해 용역계획 및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 민원발생 등의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 계약내용에 따른 예산 변경 시
- 관계기관 협의 등의 사유로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나. 다음 하기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가 일방적 계약해지를 통보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정당한 사유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 계약서에 명시한 용역수행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 본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부정 및 법률 저촉으로 발주처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상호간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 부득이 소송을 할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처 소재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6. 사업보고

가.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과업착수보고 추진

나. 중간보고 : 중간단계 과업수행 보고(발주기관 요청 시)

다. 최종보고 : 과업종료 후 10일 이내 모든 추진단계의 결과 보고

7. 성과물 제출

가. 최종보고서 5부 및 전산파일 1개(보고서 및 자료 일체_디자인, 영상 등)